

제263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1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4월 18일
전문위원 정 우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2019 - 10
- 나.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4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4월 16일

2. 제안이유

국가 정책사업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 인력에 대한 정원조정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 개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및 납세자 보호·권리강화를 위한 세무 분야 인력 확충
- 나. 돌봄 SOS센터 본격 시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보 등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원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598명 → 1,626명 (+28명)
 - － 집행기관의 정원 : 1,567명 → 1,595명 (+28명)
 -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1명 → 31명 (변동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598명 → 1,626명 (+28명)

○ 일반직 계 : 1,593명 → 1,621명 (+28명)

– 5급 : 70명 → 70명 (변동없음)

– 6급 이하 : 1,513명 → 1,541명 (+28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2. 28. ~ 3. 20.) 결과 : 의견 없음

(2) 사전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본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돌봄 SOS센터 사업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 인력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조정

- 정원의 총수를 기존 1,598명에서 1,626명으로 28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7명에서 1,595명으로 28명 증원
- ※ 의회사무기구 정원 변동 없음

2) [안 제3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 조정

- 정원 총계를 1,598명에서 1,626명으로 28명 증원
- 일반직 계를 1,593명에서 1,621명으로 28명 증원
 - 5급은 70명으로 변동 없음
 - 6급 이하 1,513명을 1,541명으로 28명 증원

다. 종합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해야 하고 그 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리기관 :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보건소), 동 등으로 구분

- 또한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무인력 확충과, 돌봄 SOS센터 시행 등 새로운 행정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추후 사업별 적정 인력 배치 등 체계적인 인력 운용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